

법무상식 2020년 6월 통권 제332호

www.jeonnam.go.kr

CONTENTS

2	새로운 판례
13	법령해석사례(법제처)
38	행정심판 재결사례
56	행정소송 판결사례
60	생활법률 상담사례
70	법무단신
87	최근 개정 시행법령
93	최근 제정 자치법규
117	솔로몬의 재판

새로운 판례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6다2337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제33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1조 제5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1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참조).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고 이를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전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시행계획에서부터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정문부지 위치의 토지를 1필지로 정비하여 양도하기로 설계하고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은 다음 이전고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원고 학교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토지의 종전 지번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피고(선정당사자)가 변경등기촉탁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함으로써 원고 학교법인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전되자, 원고 학교법인이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소유지적이 새로이 창설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의 관념이 있을 수 없는 진정 체비지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종전 지번에 불과한 경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제한이 원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련한 단체의 대표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5도8490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 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 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 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 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오508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앞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67조 제1항), 특히 감치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만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그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68조), 감치명령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같은 법 제6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위와 같이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2. 11.자 2015오26 결정 등 참조),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신청인이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사건본인의 인도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이행명령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선행상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애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애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두31774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애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 (우안, 광각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애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은 2005년 7월 22일 사고로 인하여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년 9월 30일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년 2월 2일 우안 실명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장애진단을 받았음.

☞ 원고의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그 요양 종료일인 2005년 9월 30일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애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음.

-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상병이 2005년 9월 30일 완치되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애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장애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장애급여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 대법원은 선행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다시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음.
- ☞ 그에 따라 피해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후행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행 상병에 관하여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애급여 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애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2)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대법원 2018두37250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한편,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 5. 22.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여 비의료인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 역시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따라서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히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 및 그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실질적 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사건임.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히 이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 및 그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법령해석사례(법제처)

사례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각주: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인 것을 전제함.)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각주: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을 전제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되는지?

회 답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3. 9. 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령 및 유용 행위에 대해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법에서는 각각 법정형을 달리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1999년 4월 30일 법률 제5979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현행과 같이 「아동복지법」, 보조금법 및 「형법」상 특정 규정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각주: 법제처 2015. 6. 23. 회신 15-0247 해석례 참조)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 유형을 구체적인 법률에 따른 범죄로 특정한 것은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열거하여 규정된 법률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포함된다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가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을 보조금법 제40조제1호 또는 제41조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로 규율하고자 하는 범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4. (생략)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 3. (생략)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3.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생략)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3. (생략)

③ ④ (생략)

〈관계 법령〉

사례 2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질의요지

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하여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함)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 5. 31.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안전·표시기준”이라 함)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및 구 안전·표시기준 제6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3일(각주: 화학제품안전법이 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가 개정되었는바, 해당 법률이 시행되기 전 날을 의미함.)까지의 기간에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표시 기준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16호 및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하여 구 안전·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안전·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 제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은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각주: 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해우려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화학제품안전법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각주: 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이유서 참조)된 법률로서,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 및 구 안전·표시기준 제6조의 안전기준등 관련 내용을 제정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하면서 이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 확인을 받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확인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둔 경과규정(각주: 2017. 8. 6. 의안 번호 제2008531호로 발의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즉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 규정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안전기준 확인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을 포함함)을 이미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까지 허용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 위해우려제품이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에도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금지를 명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가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제3항)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23일까지의 기간에 구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이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된 것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한 것을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각주: 2018. 12. 3. 의안번호 제2016992호로 발의된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하면서 경과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당 개정을 이유로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의 금지 명령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정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2조는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⑦ (생략)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 5. (생 략)

② (생 략)

2018. 3. 20. 법률 제15511호로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 칙 〈제15511호, 2018. 3. 20.〉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 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각주: 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 화학제품안전법 부칙)제2조(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24.〉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 5. 31. 환경부고시 제2019-9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별표 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물·부산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등 시험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략)

〈관계 법령〉

사례 3

민원인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기제공무원(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임용한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답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의 지급 시점으로 65세가 되는 때(제1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각주: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각주: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함.)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2호),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3호)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인 60세에 도달하여 퇴직한 경우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공무원 임용관계법령등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되었을 때 및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에 대해 각각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임을 고려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 따라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전제(각주: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례 참조)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면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시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퇴직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임기제공무원의 의미 및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에 관한 규정(제66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1조의3제1항) 그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제21조의4제1항 본문)하고 있는바, 임기제공무원은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체계 및 그 취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의미와 법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임기제공무원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 ~ ⑧ (생략)

〈관계 법령〉

사례 4

민원인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등 관련)

질의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중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에서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에서 각 호의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각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사용(제1호)하거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제2호) 등은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도록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는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공유수면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는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한 수의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재량이 인정되는데,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해당 공유수면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다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를 판단할 때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으로 한정하여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해야 한다면,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는 지장이 없지만 해당 공유수면과 접한 다른 부분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공유수면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수면법령의 체계 및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1. (생략)

② ~ ⑨ (생략)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2.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한 자

3. ~ 6. (생략)

②, ③ (생략)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사례 5

민원인 -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 되면서 소규모주택(각주: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제80조제5항 단서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이 시행된 2019년 4월 23일부터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소규모주택에 대해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경우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는지?(각주: 개정 건축법 시행 후에도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종전 조례 규정이 상당기간 계속 시행되다가 나중에 개정 건축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조례가 개정된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유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0조제5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본문),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단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등(각주: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위법 상태를 지속하는 문제가 있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015532호 관련) 참조)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면서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고,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여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총 부과 횟수의 제한 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미 구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던 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각주: 「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건축법 제80조제5항에서는 건축물 종류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횟수에 대해서만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건축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정한 것(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인바, 이를 근거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⑦ (생략)

개정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⑦ (생략)

부 칙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 법령〉



사례 6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가 포함되는지?(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전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 공간정보관리법령의 연혁법령인 「지적법 시행규칙」이 1976. 5. 7. 내무부령 제208호로 제정될 당시 제16조에서도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1986년 11월 15일 내무부령 제448호로 전부개정된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사본 등을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로 규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만으로는 해당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만 받고 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관계 법령〉

행정심판 재결사례

【제2019-291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11. 청구인에게 한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군 ○○면 ○○로 000에 소재한 피청구인 소유의 행정재산인 “○○휴게소 농산물판매장(지상 1층, 90.0㎡)”(이하 ‘이 사건 행정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4. 28.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2년간(2015. 4. 29.~2017. 4. 28.) 유상 사용허가를 하였고, 2017. 4. 10.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재산의 사용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4. 26.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2017. 4. 29.~2019. 4. 28.) 유상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이 2019. 4. 3, 2019.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재산의 사용 기간이 2019. 4. 28. 만료함을 사전 예고하자, 청구인은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2020. 10. 31.까지 사용 기간 연장(갱신)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재산 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재산 원상태 반환조치 촉구(1차 2019. 4. 29., 2차 2019. 5. 20.)”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간 연장(갱신)을 요청(2019. 5. 2., 2019. 6. 10.)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5. 피청구인에게 “2020. 4. 30.까지 기간 연장(갱신)”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8. 청구인에게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를 사전 예고”한 후,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게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11. 청구인에게 한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OO군
OO휴게소 1층에 소재한 농산물판매장(90㎡)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9. 4. 28.까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OO장터를 설립하여
OO군이 생산하는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사업을 해 왔다.
- 2) 피청구인은 2019. 4. 12. 사전 아무런 소명도 없이 이 사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함을 통지하고, 만료 기간까지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라고
예고하였다.
- 3) 청구인은 2019. 4. 17.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소명하고, 사용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구인이 2018. 10. 31. 피청구인[(주)****]과 체결한
온라인 쇼핑몰 ***** 관리 공동운영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 10. 31.까지만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갱신)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 4) 피청구인은 2019. 4. 24. 민원서 회신을 통해 “OO휴게소 1층 농산물 판매장은
2017. 4. 10. 위(수)탁자의 연장(갱신) 신청에 따라 2019. 4. 29.까지 재계약
체결한 공유재산 시설물로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제7조(사용
허가재산의 보존 및 제한)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허가재산에 대한 시설
투자비 등 명목으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동 허가조건 제13조
(사용재산의 반환) 규정에 따라 계약 종료일까지 사용재산을 반환하라고
독촉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며, 행정대집행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OO군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국유재산 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지적하고,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로 OO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OO군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사업 추진 성과와 실적으로 소명하면서 [(주)****]과 청구인의 공동운영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10. 30.까지만이라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갱신) 허가해 줄 것을 간절히 재요청하였다.

- 6)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5. 9. 민원서 회신을 통해 청구인의 기간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반환 독촉만 거듭하여 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의 판매장에 납품하는 OO군 관내 33개 업체가 공동 제출한 탄원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갱신) 재요청하고, 2019. 8. 5. OO휴게소의 본 건물 명도 기한인 2020. 4. 30.까지만이라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을 모두 불허하고 소명절차도 없이 원상태 반환 독촉만 하였고, 2019. 8. 28.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를 사전 예고 통지하고, 뒤이어 2019. 9. 11.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고자 심판 청구를 하였다.
- 7) 청구인은 농산물 생산자의 사업 수익성 확보와 복지증진, 관광 OO의 길을 개척하여 성과를 거두는 등 OO군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성과와 실적은 다음과 같다.
 - 2018년도 말 현재 관내 생산 제조업체 33개 거래업체 및 구매고객 회원 5,000여 명 확보로 연간 매출 5억 2천만 원 달성
 - OOO 유자 시가 2억 원 상당품 중국 수출 길 개척
 - (주)OO과 OOO 유자 연간 20t 상당 납품 계약 체결
 - OO마켓에서 개발한 OOOO골드 신제품 개발 공로로 OO석류 친환경연구소에서 농림식품부장관・국무총리상 수상
 - OO농수산물 7개 품목 OO마켓 단독제품 개발 판매 중
 - OO일보, OO일보의 2018년 “소비자만족대상” 온라인 후보기업 선정
 - OO군이 원산지임에도 OO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온 OO산 미역, 다시마 원조 지위를 회복하고, 제조사 OEM 방식으로 위탁 50만봉 판매
 - 무조미김 10만 상자 이상 판매실적 거양
 - 2019년도 1천억 원대의 시장인 새마을중앙회에 OO산 미역·다시마·김 지정 판매업체로 2개소의 공장을 등록 등

- 8)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과장하여 집요하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갱신) 불허가 이유 등에 관하여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비 1억 원을 투자(법인설립 5천만 원, 매장 시설물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하여, 약 2년간 비어 있어 방치하고 있던 휴게소의 시설물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매장 환경을 조성하고, 그간의 사업 성과로 OO군민의 수익성을 향상한 점, OO군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 등에 대하여는 전혀 참작하지 않고 계약 조건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기간 연장(갱신)을 불허하고 있다.
- 9) 특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 기간) 제1항에 명시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서 명시한 청문 절차를 결한 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만을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임대차 관련 법령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입법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 부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 기한인 2020. 4. 30.까지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갱신)함이 옳다 할 것이다.
- 10) 참고로, 청구인은 전임 *****군수 재직 당시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군수와 무관하게 당시 OO군 *****담당계장(현재는 OO군 *****과장)의 권유로 이 사건 쇼핑몰의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은 OO군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마치 전임 군수의 특혜를 받아 (주)OO장터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사적 감정을 앞세워 “청구인은 전임 군수 시절에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아 그간 혜택을 많이 봤으므로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사용 기간 연장(갱신)을 고의로 방해하면서 사용 허가 기간 연장(갱신)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 11) 피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촌 오빠뻘 되는 ○○○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여 세계 낚시 추진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기 위함이며, 사전답사까지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청구인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다닌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 12) 특히, 본 매장을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 계획 없이 사용허가 기간 연장(갱신)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이상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특정인에게 사용허가를 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는 OO 주민 대다수가 알고 있고, 특히 방OO·방OO 등은 피청구인의 제반 행위 등에 대하여 더 소상하게 알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깊이 살펴 이를 참작하여 주기를 바란다.
-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간 특혜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관내·외 지역의 다양한 계층들로부터 이 사건 행정재산의 연장을 허가하는 것은 특혜라는 청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하나, 사실은 이와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첨부한 탄원서와 민원서 및 방송기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2019. 10. 6. 21:00 MBC 뉴스데스크에서 “OO군의 OO마켓 등 유상 사용허가 연장관련 갑질 등”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 14) OO휴게소 건물은 1층에 점포 4개, 2층 점포 1개가 있는데, 이 중 1층 1개 점포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에게도 2020. 4. 28.자로 점포를 명도 받은 후 새로운 입주자들에게 사용허가를 해 줄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최소한 2020. 4. 28. 또는 2020. 10. 30. 중 적정한 시기까지는 청구인에게 사용허가를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군정 및 국가 시책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 15) 참고로, 온라인쇼핑몰 “*****”과 유사한 다른 온라인쇼핑몰(농수산물 판매 대표회사인 “****”)도 관내 각 동마다 샘플 매장을 갖추어 소비자가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면 온라인 쇼핑몰만 가지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OO마켓의 오프라인 매장이 이 사건 행정재산의 연장 허가가 필요하다 하겠다.

- 16) 피청구인이 정부로부터 국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나 이전을 준비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10일 전에야 통보하면서 사용허가 연장요청을 불허하고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 17)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은 2019. 11. 16.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부 2, 3, 4, 5 중수골이 골절되어 2019. 11. 22.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내고정술 등을 시행하고 가료하고 있다. 골절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려면 최소한 3개월 상당이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몸 상태로 점포를 명도하고 새로운 점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소한 위 기간(2020. 4. 28.)까지 만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OO도 휴게소라는 고정재산이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이기에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OO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의2(수익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 2) 청구인이 2015년~2019년까지 4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건물 유상 허가를 받아 “*****”을 운영해 오는 동안 피청구인은 관내·외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상인 등으로부터 “*****”의 유상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사람이 OO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법이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현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OO마켓의 유상 사용 허가권을 연장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특혜이며 부당하니 지켜보겠다”는 청원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 3) 이러한 가운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맺은 사용허가 기간이 2019. 4. 28. 만료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용허가 기간 만료 사전 예고 통보 공문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규정에 따라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민원서를 통해 청구 외 OO유통이 “*****”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을 2018. 10. 31. ~ 2020. 10. 31.(2년)

- 까지 청구인에게 위탁하였으니, 오프라인 매장인 이 사건 행정재산도 2020. 10. 3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4)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불허하자, 그 간의 성과와 허가 기간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한 위반사실 등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2020. 4. 30.까지 연장해 주기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7회에 걸쳐 청구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거듭 촉구해 왔으며, 이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대집행을 강행하기 위해 이 사건 계고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이 2020. 4. 30.이 OO 휴게소의 명도기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참고로 이 사건 농산물판매장을 제외한 OO휴게소 공간(1층 3칸, 2층 식당)은 청구외 김OO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입찰을 통해 2022. 4. 30.까지 5년간 사용허가를 하였다.
- 5) 청구인이 “*****”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권을 2020. 10. 31.까지 위탁받았으니 최소한 위탁기간이 종료하는 2020. 10. 31.까지 현 OO도 휴게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몰을 병행하여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연장을 요구하나, “*****” 온라인 쇼핑몰은 OO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유상 사용허가 연장 요구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년 동안 공유재산 운영권을 독점해온 청구인에게 또다시 청구인의 요구대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역 내 상인 등으로부터 기회 제공 차단에 대한 불평이나 특혜 의혹으로부터 피청구인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6) 공유재산의 수익권은 군민 누구에게나 보장하여야 하고, 그 수익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당초의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 7)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재산의 유상 사용 허가 요구에 대해 상당한 이유는 있으나,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피청구인은 행정의 투명성 저하와 객관성 실추라는 군정 수행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8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4) 「OO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의 2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O휴게소는 OO군 공유(행정)재산으로, OO면 OO로 000에 위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1층 소매점 466㎡, 2층 일반음식점 348.84㎡).

2) 청구인은 2015. 4. 27. 피청구인에게 “OO휴게소 농산물판매장(지상 1층, 90.0㎡)” (이하 ‘이 사건 행정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 4. 28.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유상 사용허가를 하였다.

－ 사용허가기간 : 2015. 4. 29. ~ 2017. 4. 28.(2년간)

－ 사 용 목 적 : OO군 브랜드 ***** 온라인 판매 및 농산물 판매

－ 사 용 료 : 3,113,55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허가조건

- 제1조(사용목적) 이 허가에 의한 군유행정재산은 전남 OO군 브랜드 OO마켓 온라인판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조(사용허가 기간) 허가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중 략 -

-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OO군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OO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청구인은 2017. 4.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재산의 사용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26.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2017. 4. 29.~ 2019. 4. 28.) 유상 사용허가를 통보하였다.
- 4) 피청구인은 2019. 4. 3.과 4.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행정재산(OO휴게소 1층 농산물판매장) 사용허가 기간이 2019. 4. 28.로 만료되어 사전 예고 통보하니 사용허가서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규정에 의거 계약 만료 시까지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기 바람
- 5) 청구인은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연장(갱신) 요청하였다.
 - 제 목 : 영업장소의 반환 요청 통보에 대한 기간 연장(갱신) 요청 신청
 - 주요내용
 - 청구인은 OO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라는 상호로 OO군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영업장소는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전시공간, 주문 제품 보관기능을 하는 막중한 장소이며, 제품 홍보와 판매를 위해 최적의 장소로 운영하고 있음
 - 4년 전 본 건물 신축 당시, 당사에서 모든 비용을 투자하여 실내 설비를 마무리하였고, 쇼핑몰이 적자인 상태에서 당사가 위임을 받아 시작할 당시 회원이 단 한 명도 없었으나 현재 회원 5,000명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임
 - 통상 쇼핑몰은 5년 이후 이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홍보와 회원 확보에 많은 시일이 필요한 사업인 쇼핑몰 사업 기간을 2년으로 종료하는 것은 사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음
 - 이 사건 행정재산은 피청구인이 보유한 공익적 상가로써,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절차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최소한 계약 종료 기한인 2019. 4. 28.의 한 달 전인 2019. 3. 28. 이전에 통지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하였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1차 5년에 걸쳐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1회인 5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보면 피청구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
 - 이 사건 행정재산은 OO “*****” 온라인 쇼핑몰의 전시장 역할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으로써,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 및 당사의 생존권을 위해 함께 운영해야 할 공간이므로, 판매장 사용기간을 OO “*****”의 온라인 쇼핑몰 계약 기간인 2020년 10월 31일까지 재계약 연장을 간곡히 요청
- 6) 피청구인은 2019. 4. 29. 청구인에게 행정재산 원상태 반환 촉구(1차) 공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2019. 5. 2. 피청구인에게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장(갱신)을 요청”하는 민원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7) 피청구인은 2019. 5. 9.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기 통보한 민원 회신 내용과 동일함, 행정재산을 원상태 반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 8)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행정재산 원상태 반환 촉구(2차) 공문을 발송하였다.
 - 행정 재산 원상태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여 재촉구하니 2019. 5. 31.까지 이행하기 바라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변상금이 부과되며, 행정대집행 대상이 됨을 안내함
 - 9) 청구인은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장(갱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탄원서(33명) 등과 함께 발송하였다.
 - 10) 피청구인은 2019. 6. 14. 청구인에게 “동일 민원으로 종결 처리하며, 행정 재산 원상태 반환 하기 바람”을 회신하였다.
 - 11) 청구인은 2019. 8.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이 사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를 보면 “사용 목적이 OO 00마켓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홍보장임”을 명시하고 있음
 - 온라인쇼핑몰 *****은 물량의 70%를 추석과 설 명절에 판매하므로, 2020년 설 명절에도 영업할 수 있도록 2020. 4. 30.까지 연장을 간곡히 요청
 - 12) 피청구인인 2019. 8. 28. 청구인에게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및 고발조치를 사전 예고”하면서 공유재산 사용료(1,060,320원)와 변상금

- (1,272,380원)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13)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게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 14) 청구인은 2019. 9. 1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4번의 통지서를 통해 연장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나 명분 없이, 단지 사용 기간을 도과했다고 비우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 행정임
 -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 기간 5년은 보장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면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만약 철회 사유가 있어서 철회하더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한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철회할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바, 피청구인이 사용 기간을 종료하는 것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음
 - 청구인도 현재 옮길 만한 장소를 알아보고 있으나 2019. 9월 말까지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9월 말에 대집행할 경우 변질 우려의 제품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배상을 해야 할 것임.
 - 최소 2020년 1월 설까지만 영업을 마무리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람
- 15) 피청구인은 2019. 9.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함을 다시 안내함
 - 행정대집행 진행 중, 기한 내 보관 물품 처리와 시설물 원상태 반환하기 바람
- 16) 청구인은 2019. 9. 27.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4.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 17)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농산물판매장을 제외한 OO휴게소 공간(1층 소매점 3칸, 2층 식당)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청구외 ○○○에게 2022. 4. 28.까지 5년간 사용을 허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은 “처분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그간의 성과 등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조건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기간 연장(갱신)을 거부하였으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국유재산법」 규정과 같은 법 제37조에서 명시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이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유재산법 제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재산의 사용 기간을 이미 1회 연장 허가하여,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간 총 4년 동안 이 사건 행정재산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사용 기간이 만료한 행정재산을 반환하여 다른 군민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공유재산법 제26조에서 정한 청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하여 피청구인이 원상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제2019-328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15.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2019. 10. 16. ~ 12. 14.)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 10.부터 00시 000길 00, 1층(00동) 소재에서 ‘0000(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인데,

00경찰서 경찰관이 2019. 8. 24. 새벽 02:4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남편 000이 청소년 000(남, 17세)와 일행에게 소주 5병,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00지청장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000에게 벌금 70만 원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0. 15.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9. 10.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2. 10. 청구외 000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하면서 업소의 상호를 변경 신고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2019. 12. 14.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기간은 끝났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15.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2019. 10. 16. ~ 12. 14.)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 1) 사건 당시 금요일 새벽 02:54경 주방 직원 2명, 홀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9개 테이블 모두 빈 자리가 없이 손님은 40~50명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된 테이블 또한 밤 00:00~01:00에 출입한 손님 8명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바쁜 시간대여서 중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합석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
- 2) 사건 당일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빴고,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되도록 누군가 의도적으로 출입하고 가게 밖에서 싸움이 났다는 부분도 의심스럽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무거우니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 1) 청구인은 사건 당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OO경찰서에 적발 당시 너무 바빠 나중에 들어오신 분은 신분증 확인을 못했다고 시인한 사실을 경찰의 사건 적발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 2) 광주지방검찰청 OO지청장은 피청구인에게 2019. 9. 23. 이 사건 처분이 “재판 중”임을 회신하였고, 2019. 10.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을 10. 16.부터 원합니다”라는 의견 제출서를 받고 2019. 10. 16.부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통보한 것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3)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여 탈선 방지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국가뿐 아니라 학교, 가정,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이 사건 처분은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 보다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이익을 우선해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8조, 제59조
-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9. 1. 10.부터 2019. 12. 10.까지 〇〇시 〇〇〇길 〇〇, 1층(〇〇동) 소재에서 ‘〇〇〇〇’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 2) 〇〇경찰서장은 2019. 8.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 위반일시 : 2019. 8. 24. 02:45경
 - － 위반내용 : 청소년 〇〇〇(남, 17세)와 일행에게 소주 5병, 맥주 5병의 주류 판매
- 3) 피청구인은 2019. 8. 29. 청구인에게 처분(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을 사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9. 9. 16.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 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4) 피청구인이 2019. 9. 20. 광주지방검찰청 〇〇지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조회 의뢰하였고, 2019. 10. 7. 광주지방검찰청 〇〇지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재판 중”임을 회신하였다.
- 5) 청구인은 2019. 10. 15. 피청구인에게 “사법기관 최종판결과 관계없이 2019. 10. 16.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6) 피청구인은 2019. 10.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 행정처분 개요

업소명 (업 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OOOO (일반음식점)	OO시 OOO길 00, 1층(OO동)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19.10.16.~12. 14.)

- 7) 청구인은 2019. 10. 17. 이 사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8)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2개월(2019. 10. 16. ~ 2019. 12. 14.) 처분의 집행이 2019. 12. 14. 완료되었다.
- 9) 우리 위원회가 2020. 1. 21. 광주지방검찰청OO지청장(사건과장)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처분 결과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남편(○○○)에게 벌금 70만 원 처분”을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는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 23]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 23] I. 일반기준 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 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II. 과징금 제외대상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3]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4호)하고 있다.

- 2)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판 2012두1297)하고 있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판 98두11779, 대판 2004두3854)해야 할 것이다.

-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소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사건 당일 손님이 많아서 중간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OO경찰서장의 사건 적발 통보, 광주지방검찰청OO지청장이 청구인의 남편 ○○○에 대한 벌금 70만원 처분 등을 통해 청구인의 남편 ○○○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과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정소송 판결사례



사 건 ○○○○가단○○○○○
원 고 ○○○○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359,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호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지방도인 여수시 ○○면 ○○리

○○건축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은 2015. 4. 30. 16: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삼거리 방면에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원고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에 있는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로 차량 우측 부분이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원고 차량에는 ○○○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는 우측 대퇴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에게 1,521,320원, ○○○에게 94,376,62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도로 우측의 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배수로의 폭도 넓기 때문에 차량이 주행경로를 이탈하여 배수로로 추락할 경우 운전자에게 큰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방호울타리,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했어야 하고,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했어야 하며, 풀과 나무를 제거하여 운전자가 배수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가 방호울타리, 시선유도표지 및 배수로덮개 설치의무, 수풀 제거 의무를 게을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의 운전상 과실과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인 40%에 해당하는 38,359,176원 (=95,897,940원 × 4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 먼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방호울타리를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로 ‘노측이 위험한 구간’을 들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이 예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위 수로 등에 가까이 있는 도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인접지역에 수몰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배수로만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 점(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배수로의 깊이는 1m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시선유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에서는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로 ‘도로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을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사가 완만한 오르막의 직선 구간으로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배수로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수풀을 제거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지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도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은 이 사건 도로 부근인 여수시 ○○면 주민으로 위 도로를 자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경사도가 완만한 오르막의 직선 도로이고, 도로 포장 끝선에서 이 사건 배수로까지는 1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존재하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오후 시간대로서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운전자도 도로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주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배수로 덮개의 설치나 배수로 주변의 전지작업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을 감안할 때 과도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배수로 부근의 수풀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생활법률 상담사례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強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기본증명서,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입양관계증명서,
-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법무
단신**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13세 미만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2).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씨는 2016~2017년 제자였던 A군(당시 11세)과 B군(당시 13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원과 자동차 안에서 A군에게 입을 맞추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에게는 4회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2심은 “A군은 2016년 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당일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번이 유일하다”며 “피해자는 또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A군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B군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B군이 이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 주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행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등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직속 상관 등 책임자들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15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7월 해군에 입대해 그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3년 함정에 배치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앞서 교육기간 중인 2012년 9월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임무수행에 곤란을 겪거나 상관, 동기로부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도 받았다.

“부대 지휘관의 후속조치 소홀 직무상 의무 위반”

그런데 A씨 소속 소대장은 검사 결과와 달리 그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누구에게도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담임교관 역시 A씨의 인성검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그에게 특이사항이나 문제가 없다고 기록했다. A씨는 함정에 전입한 후에도 인성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자살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부모에게는 각 1억1400여만원을, 누나와 형에게는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급 부대의 지휘관 등은 장병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자살이 우려되는 장병을 식별하고 그의 신상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자살의 가능성이 확인된 장병에 대해서는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등을 거쳐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국가상대 손해 소송 유족
패소 원심 파기

이어 “각급 부대 관계자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은 해당 장병이 군부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며 “인성검사 결과 A씨에게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관계자가 후속 조치를 할 직무상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속 부대 관계자들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사 받은 전력 숨기고 대통령 비서실 최종 합격

임용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지원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43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A씨는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최종합격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3개월만에 이를 번복했다. A씨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1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제출서류의 유의사항 중 하나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질문서는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A씨는 질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허위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면서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데에 그쳐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8707)에서 최근 “피고는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 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A씨의 이 같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무
단신**“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 산입 안돼”**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처리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85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모 제지회사 대표인 엄모씨는 2009년 신한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신한은행이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에 엄씨에게 손해배상금 15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엄씨에게 200여억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후 해당 금액을 손금 불산입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신한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한쪽 편에 가담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은행의 적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이행으로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한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 항소심도 “국가에 배상책임 有”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날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숨진 참가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당시 집회에서 숨진 김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52852)에서 “국가는 3100만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2017년 3월 10일 김씨는 현재 인근인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현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집회는 과격한 양상으로 흘렀다. 흥분한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 받았고, 이 충격으로 경찰버스 옆에 세워져 있던 소음관리차가 흔들려 차 지붕 위의 대형 스피커가 김씨의 머리와 가슴 쪽으로 떨어졌고 김씨는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2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뒀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충돌로 생긴 차벽 틈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라고 썼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750).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B양의 어머니인 A씨는 학교수업 참관 등에서 만난 가해학생 C양에게 “앞으로 내 딸을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말라”는 취지의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2017년 7월 C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자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이모티콘 3개) 라는 문구를 올렸다. 다만 A씨는 이 상태 메시지에 C양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다. 검찰은 C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A씨가 C양을 비난하기 위해 상태 메시지를 작성해 공개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2심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딸인 B양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양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했거나 언어적 모욕,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를 곧바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상태 메시지를 통해 C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C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
단신

부당해고 당한 대학병원 의사 구제조치 받을 때 받을 임금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의사가 부당해고를 당해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받을 때,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아야했을 임금 기준액은 소속 대학병원이 아닌 의료법인으로부터 받은 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9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A의료법인에 입사해 A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한 B씨는 연구과정에서 병원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자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해고됐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가 과중하다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중노위의 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중노위 재심판정 중 일부 취소돼야”

재판부는 “A법인과 B씨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A법인과 B씨 사이의 관계에서 A법인은 B씨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해 해고일로부터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대학교가 아닌 해고를 한 A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A법인이 B씨에게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면서도 A법인이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이 아닌 대학교가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 임금상당액을 산정했다”며 “2015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3월 24일까지 대학교 지급 임금은 1913만원, 같은 기간 A법인이 지급한 임금의 금액은 1227만원으로 그 차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 부분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A법인이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가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처분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명령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 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변호인 법무법인 클라스 윤성원 대표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 14340).

A씨는 2016년 6월 14일 B씨로부터 18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고, 2016년 12월 15일 이 아파트를 채권최고액 12억원에 C사에 4순위 근저당권을 경료해줬다. 이 일로 A씨는 1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B씨에게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는 A씨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처럼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저당권설정의무는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의 저당권설정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의무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해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법무
단신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둘은 이혼하되,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자녀 맡은 아내,
남편 빚 나누면 채무초과로 부당”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재산분할 기각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6월 2일 시행법령]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2.]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 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5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1조).

라. 관련 규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제56조제1항).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1항).



**[6월 9일 시행법령] 코로나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 안정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 2020. 6.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에 따른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의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확대(제21조의3제5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급 휴직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제22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 규칙의 변경 등 다양한 노사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확대(제26조제8항 신설, 부칙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달리 정하여 일정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6월 11일 시행법령] 행정 절차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법이 개정됩니다!!

「행정절차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며, 종전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 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6월 25일 시행법령] 주차장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주차장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 나.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2항).
- 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6월 18일 시행]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0. 06. 18.] [2020-06-18 조례 제 5088호,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2.)

제3조(도민의 책무) 전라남도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 추진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6. 1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성별임금격차 및 고용상의 성차별 등 개선 방안 (신설 2020. 6. 18.)
 5.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지원 (신설 2019. 8. 1.) (개정 2020. 6. 18.)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8. 1., 2020. 6. 18.)
-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양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18.)
-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0. 6. 18.)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노동정책 및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6. 18.)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9. 8. 1.) (개정 2020. 6.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가족정책관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3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2.)
② 간사는 여성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

제15조(양성평등주간행사)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2.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3.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제3장 양성평등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2. 22.)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4.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중 도 공모사업 지원 (신설 2019. 8. 1.)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19. 8. 1.)

제19조(기금관리 심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1. 2.)

제20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여성가족정책관 (개정 2017. 11. 2.)
2. 기금출납원: 여성정책팀장 (개정 2015. 12. 31.,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2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25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 등이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7. 11. 2.)

제4장 여성친화도시 (개정 2019. 8. 1.)

제27조(지원) (신설 2019. 8. 1.)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1.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 8. 1.)
2. 시민참여 활성화 (신설 2019. 8. 1.)
3. 여성친화도시 연구·정책 자문 (신설 2019. 8. 1.)
4.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관리 (신설 2019. 8. 1.)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19. 8. 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제28조(도시기반시설) (신설 2019. 8. 1.) 도지사는 공공, 기업, 주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에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여성친화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

1.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편의 (신설 2019. 8. 1.)
2.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신설 2019. 8. 1.)
3.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신설 2019. 8. 1.)
4. 여성·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 예방 환경설계 (신설 2019. 8. 1.)
5. 육아·노인 돌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정착 기반 마련 (신설 2019. 8. 1.)
6.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창업 전문직업 양성환경 조성 (신설 2019. 8. 1.)

제29조(교육) (신설 2019. 8. 1.)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니터링단,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제30조(홍보) (신설 2019. 8. 1.)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전라남도·관련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제5장 전남여성가족재단

제31조(설치)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여성의 능력 개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8. 1.)

② 재단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일원에 둔다. (개정 2019. 8. 1.)

③ 그 밖에 재단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1.)

제3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별 세부 사용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1.)

④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⑤ 도지사는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제33조(사용료의 감면)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8. 1.)

1. 전액면제 (개정 2019. 8. 1.)

가. 국가 또는 도가 주관하는 여성관련 행사 (개정 2019. 8. 1.)

나. 도에 등록된 여성관련 법인·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 8. 1.)

2.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9. 8. 1.)

가. 제1호 가목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및 주최 하는 행사 (개정 2019. 8. 1.)

나. 제1호 나목을 제외한 전남에 소재한 여성단체·가족관련기관·여성관련법인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 8. 1.)

다. 재단 입주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8. 1.)

②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 2019. 8. 1.)

제34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19. 8. 1.)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17. 11. 2., 2019. 8. 1.)

2.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17. 11. 2., 2019. 8. 1.)

3. 사용자가 사용일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 (개정 2017. 11. 2., 2019. 8. 1.)

4. 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반환 (개정 2017. 11. 2., 2019. 8. 1.)

제35조(사용의 취소·정지 등)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1. 2., 2019. 8. 1.)
 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9. 8. 1.)
 3. 그 밖에 재단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8. 1.)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1.)

제36조(위탁관리)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사무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재단 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단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제6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37조(설치·지정) (개정 2019. 8. 1.)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설치하거나 지정한다. (개정 2019. 8. 1.)

1.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 (개정 2019. 8. 1.)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개정 2019. 8. 1.)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개정 2017. 11. 2., 2019. 8. 1.)

제38조(사업) (개정 2019. 8.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1.)

1.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 교육 과정 개설·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19. 8. 1.)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개정 2019. 8. 1.)

3.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그 밖에 휴게실, 식당 등 이용자의 편의 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개정 2017. 11. 2., 2019. 8. 1.)

4.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9. 8. 1.)

제39조(이용대상) (개정 2019. 8. 1.) 센터는 여성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외의 사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제40조(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19. 8. 1.) ① 센터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등 교육, 훈련비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예산에 편입시켜 해당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③ 평생교육 목적으로 징수한 학습비 등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9. 8. 1.)

제41조(규정의 제정) (개정 2019. 8. 1.) ① 센터를 지정·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비용환불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 따라 제정하는 규정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신설 2017. 11. 2., 개정 2019. 8. 1.)

제42조(운영비 등의 보조)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 (개정 2019. 8. 1.)

2. 인건비 (개정 2019. 8. 1.)

3. 시설기자재 설치비 (개정 2019. 8. 1.)

4. 교육훈련경비 (개정 2019. 8. 1.)

5. 관리비 (개정 2019. 8. 1.)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 8. 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등 보조금은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1.)

제43조(운영위원회) (개정 2019. 8. 1.) ① 센터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8. 1.)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정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제44조(다른 법령의 적용) (개정 2017. 11. 2., 2019. 8. 1.) ① 센터는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19. 8. 1.)

② 센터의 장은 센터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

③ 센터가 취업정보의 제공·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등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제7장 양성평등발전 유공자 표창

제45조(포상) (조명개정 2017. 11. 2.) (개정 2019. 8. 1.)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복지증진에 공헌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제46조(공적심의회) (개정 2019. 8. 1.)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의는 전라남도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8. 1.)

제8장 보칙

제47조(사무의 위탁)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② 그 밖에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및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제48조(지도·감독) (개정 2019. 8. 1.)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② 도지사는 법령 위반이나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

제49조(시행규칙) (개정 2019. 8.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 2019. 8. 1.)



[6월 18일 시행]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06. 18.] [2020-06-18 조례 제 5093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3. “동물보호센터”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체외 부착형 인식용 목걸이(전자 태그)를 말한다. (신설 2014. 11. 13.)
6.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 12. 31.)
7.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제3조(동물의 등록) ① (삭제 2017. 6. 20.)

②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③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④ (삭제 2017. 6. 20.)

제4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개정 2014. 11. 13.)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3., 2017. 6. 20.)

1.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島嶼) (개정 2014. 11. 13.)

2.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면 (개정 2014. 11. 13.)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삭제 2017. 6. 20.)

② 시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1.)

1. 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③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④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⑤ 도지사는 유기동물의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⑥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재지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19. 12. 31.)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 현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⑧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12. 31.)

제7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① (삭제 2017. 6. 20.)

②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8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전라남도 누리집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0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한 때에는 반드시 납입사실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④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고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1항에서 동물을 애호하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1.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17. 6. 20.)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7. 6. 20.)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개정 2017. 6. 20.)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동물의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⑤ 동물보호센터 또는 영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13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려는 경우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며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1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①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에 따르며, 수수료의 청구 절차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 6. 20.)

②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개정 2017. 6. 20.)

2. 유기견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개정 2017. 6. 20.)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17. 6. 2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17. 6. 20.)

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17. 6. 20.)

6. 세 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두 마리를 초과하는 한 마리당: 100분의

50 (개정 2017. 6. 2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신설 2020. 6. 18.)

제16조(진료비 지원)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8.)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시장·군수가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0. 6. 18.)

제1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효율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6. 20., 2020. 6. 18.)

1. 제6조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2. 제7조의 동물보호센터의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3. 제8조의 유기동물의 포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4. 제9조의 보호동물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5. 제10조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6. 제11조의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7. 제12조의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8. 제13조의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20.) (개정 2020. 6. 18.)

제18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신설 2019. 12. 31.)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관을 기르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0. 6. 18.)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 정착을 위해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문화 행사·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0. 6. 18.)

[6월 29일 시행]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06. 29.] [2020-06-29 조례 제 5108호,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소속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의 행위를 말한다.
 -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의 행위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나목의 행위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도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도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다. 도지사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부조리 신고) 누구든지 부조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방법) ①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대상과 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부조리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팩스, 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처리) 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관계 공무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 및 협조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또는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호·보상제도 안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 된 때
2.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0조(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④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신고보상금에 따라 신고보상금은 예산 편성 후 9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도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개시하였거나 또는

징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6.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환수) 도지사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에서 규정한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갑작스럽게 부과된 헬스클럽 연회비, 납부해야 하나요?

정헬스는 스포츠센터 개관 무렵 일반회원들에 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몸짱 헬스클럽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몸짱 헬스클럽은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으로 갑자기 사정이 생겼으니 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헬스는 몸짱 헬스클럽이 부과한 헬스클럽 연회비는 과하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정헬스: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연회비를 이렇게 많이 납부하라니 너무 과합니다!
2. 몸짱 헬스클럽: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아요!

☞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정헬스: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연회비를 이렇게 많이 납부하라니 너무 과합니다! 입니다.

본 건 사안은, 헬스클럽이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인상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헬스클럽이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헬스클럽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헬스클럽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헬스클럽으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098 판결 참조).

원심법원은 회비의 인상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개관된 1985년부터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회비를 부과한 2012년까지 사이에 ① 생산자물가지수는 2배 이상, 소비자물가지수는 3배 이상 상승한 점, ② 금리는 연 10% 수준에서 연 3% 수준으로 하락한 점, ③ 스포츠센터가 43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설의 증·개축이 이루어진 점, ④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36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8배 가까이 인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스포츠센터가 산정된 회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3296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전에도 물가상승, 금리하락이 10년간 계속된 시기가 있었음에도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스포츠센터가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히 물가가 상승하였다거나 금리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고, 특별회원의 보증금이 일반회원 부담액수의 일정 비율로 정해졌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할 수는 없으며,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 점을 감안하여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본건

회비 인상 수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한 다음,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연회비 등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따라서,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몸짱 헬스클럽이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연회비 등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헬스는 인상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회비 인상권한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연회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스포츠센터 회원으로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